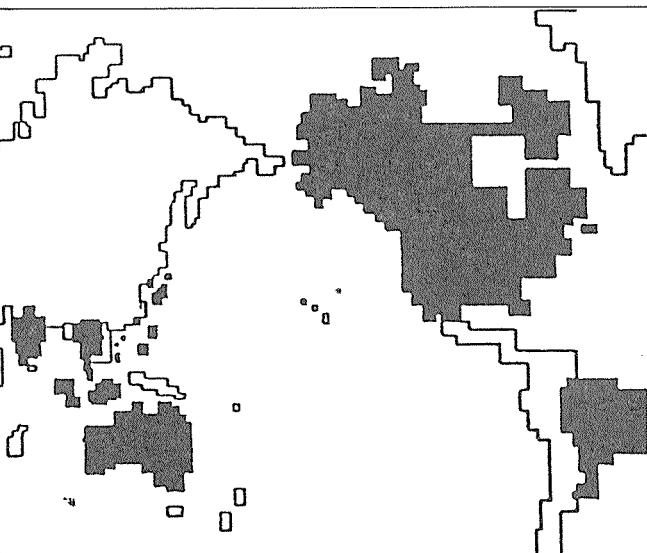


## 전자산업 통상전략 포럼

# 반덤핑제도 현황 및 제소사례와 산업피해구제제도

김 한 진 과장  
무역위원회

### 목 차



본고는 지난 6월 13일~14일 본회에서 개최한  
「전자산업 통상전략 포럼」중 일부 내용을 수록  
한 것임

#### I. 반덤핑제도의 개관

#### II. 우리나라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 III. 딥핑조사 사례연구

#### IV. 반덤핑제도 운영진망

## I. 반덤핑제도의 개관

### 1. 덤픽의 개념

#### □ 개념

○ 반덤핑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인 WTO반덤핑협정<sup>1)</sup>상 덤픽은 특정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덤픽으로 정의된다.

–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을 덤픽마진이라 하며, 덤픽마진을 수출가격(통상 CIF수입가격)으로 나눈 것이 덤픽마진율 또는 덤픽률이라 한다.

– 정상가격은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할 수 있다.

$$* \text{ 덤픽(마진)율} = \frac{\text{정상가격} - \text{수출가격}}{\text{과세가격(CIF)가격}}$$

#### □ 덤픽수출을 하는 이유와 양태

○ 생산자가 시장차별화를 통한 이윤극대화 원리에 입각하여 완전 조업상태를 지속시키면서 국내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잉 생산량을 수출하거나 과잉 재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 수입국내의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또는 경쟁자의 시장점유율을 조정하려는 약탈적 덤픽

(predatory dumping) 또는 시장지배목적의 덤픽

○ 정부 또는 기업의 수출시장진출을 위한 전략

○ 통제국가는 개도국에서의 경화 확보수단 일환

○ 수입국내 다른 수출자 또는 수입국 국내생산자의 가격인하 또는 가격경쟁 선도에 따른 덤픽(technical dumping)

### 2. 덤픽수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 □ 덤픽수입의 효과

□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

– 단기적으로는 덤픽에 의하여 수입품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잉여를 제공한다.

□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

– 수입국에 국내산업이 존재하는 경우 덤픽에 의한 저가판매는 국내 생산자의 매출을 감소시켜 생산설비의 유효화 및 고용감소 등 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한다.

– 장기적으로는 덤픽수입품이 국내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 3. 덤픽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덤픽방지관세의 부과)

#### □ 덤픽방지관세의 부과요건

○ 덤픽수입사실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거나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자연, 덤픽수입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 덤픽방지관세의 부과효과

○ 긍정적인 측면

– 외국의 덤픽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외국의 덤픽공세를 봉쇄 또는 제한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

○ 부정적인 측면

– 단기적으로 덤픽방지관세 부과율 만큼 가격이 상승되어 소비자 부담 증가.

–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이 국내시장에서 집중도가 높을 경우 덤픽방지관세는 경쟁제한적으로 작용하여 국내생산자의 독점지위를 강화

### 4. 반덤핑제도에 관한 국제 규범

#### □ 반덤핑제도의 생성배경

○ 1990년대를 전후하여 산업혁명의 결과로 산업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세계적 여유생산능력으로 과잉생산된 상품처리를 위해 덤픽이 만연할 것을 대비하려는 방안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

주<sup>1)</sup>:GATT1994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을 의미하며 이하 WTO반덤핑 협정이라 함.

## 반덤핑 관련법을 제정.

- 1903년 카나다 관세법에 도입
- 1905 뉴질랜드 도입
- 1906년 호주 도입
- 1916년 미국에 재정정수법에 도입

○ 1947년 GATT설립시 미국의 주도로 입안한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초안에 도입되어 협상절차를 거쳐 GATT 제6조에 도입되었으며, 1967년에는 GATT 제6조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별도의 반덤핑협정이 처음 제정되고,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1차 개정되고, UR 결과에 따라 1994년 WTO반덤핑협정으로 개정된다.

## □ GATT체제하의 국제규범

○ 1947년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설립된 GATT에서 덤핑을 규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으로 제6조 반덤핑관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덤핑규정의 기초를 확립

- “체약국은 1국의 물품이 타국의 영역내에 정상가격이 하로 수입되는 덤핑이 체약국내에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저연 시킬 때에는 이러한 덤핑이 비난되어야(to be condemned)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GATT

## 제6조 제1항)

- 그러나 동 규정은 기준과 해석상 모호한 점이 많아 회원국들이 덤핑마진 산정이나 피해판정에 있어서 자국산업보호 위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된다.

○ GATT는 반덤핑규정의 자의적 운용을 제한하기 위해 케네디라운드(1962 – 1967)에서 1967년 반덤핑협정<sup>2)</sup>이 제정되고, 도쿄라운드 협상결과 1979년에 대폭 보완·개정되었다.

## □ WTO체제하의 국제규범

○ 각국의 신보호주의적 무역정책으로 인한 세계무역질서 문란과 GATT규범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UR협상 타결

○ 그 결과 WTO라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가 기존의 GATT체제를 대체하였으며, 반덤핑분야에 있어서도 각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방법 및 절차가 보다 명료화 되었다.

- 조사신청은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가 할 수 있으나 조사개시 요건을 지지도 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생산량이 찬반의사 표시자들의 생산량의 50%일 것과 국내 전체 생산량의 25% 이상 일 것과 충분한 증거 검토등 조사개시 요건을 강화한다.

- 덤팡률산정시 정상가격과 덤팡수출가격을 가중평균가격 대 가중평균가격 또는 개별가격 대 개별가격으로 비교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덤팡마진을 크게 산출 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였으며 피해판정시 덤팡마진을 고려함과 아울러 덤팡수입국이 2개국가 이상인 경우 누적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선하였다.

## □ 반덤핑제도에 대한 논의

### ○ 우회덤핑 문제

UR협상에서 미타결 문제인 제3국 조립수출과 수입국내 조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회 덤팡수출에 관한 논의 계속되고 있다.

- 제3국 조립에 의한 우회덤핑의 경우 반덤핑조사 절차 적용 여부(수입국은 조사절차없이 부과를 주장)

- 수입국내 조립의 경우 우회덤핑 판정기준 설정문제 등

• EU의 경우 local content 50% 충족 등

- 제3국 조립수출의 경우 우회덤핑 조건은 충족하지 않았지만 반덤핑규제 대상 수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의 생산자·수출자가 덤팡하는 경우(Country hopping) 소급 부과 등

### ○ 반덤핑제도와 경쟁정책

- 각국의 경제법과 정책이 서로 다른데 따라 반경쟁적 관행이 무역 규제수단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OECD 및 WTO 차원

주2) : GATT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의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96. 12 싱가폴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이 신무역의제로 제기되었다.

- 덤핑은 약탈적 덤핑 또는 시장지배목적의 덤핑을 규제해야 한다는 덤핑규제요건의 강화 움직임이 있다.(주로 수출국 입장)

• 이에 따라 공정경쟁 차원에서의 덤핑규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 ○ 반덤핑제도 무용론

- 선진국의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덤핑수출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 국내생산자가 구조조정 내지 경쟁력 강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품목이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시적 덤핑 수입 침투행위를 정부가 방지하지 않으면 국내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

#### □ 다른 산업피해구제제도와의 차이점과 유사점

##### ○ 상계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와 반덤핑 관세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그 대상인 수입품이 상계관세는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인 반면 반덤핑관세의 수입은 덤핑수입물품인 점이 차이가 있으며, 국내산업의 피해 및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기타 빨동 요건과 조사절차 그리고 부과조치는 반덤핑제도와 같다.

#### ○ 세이프가드 제도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거래인 특정 수입물품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한시적인 구제조치로 수령제한 또는 관세인상을 하는 제도로서 불공정한 무역인 덤픽행위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와는 구별된다.

○ 국제 무역 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에서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는 이원화된 조사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 상무부가 덤픽방지관세의 부과명령을 내리고 연례재심을 하고 있다.

#### □ 담당기관

- 상무부: 신청의 접수, 조사개시결정, 덤픽률 예비 및 최종결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연례 재심 등

- ITC: 산업 피해 예비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최종조사 및 판정

• 위원: 정원은 9명이나, 현재 6명의 위원 임명(민주당 출신 3인, 공화당 출신 3인)

### 5.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 가. 미국

##### □ 특징

○ 미국 반덤핑제도의 운용은 상무부에서 국내생산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상무부에서는 덤픽률을 조사하고,

#### 다. 주요국의 산업피해구제기관 비교

	미국	EU	캐나다	한국
기구	국제무역위원회 (USITC)	EU집행위원회 (DG 1)	국제무역심판 위원회(CITT)	무역위원회 (KTC)
성격	대통령 산하 독립규제위원회	EU소속기관 (DG1 C국 E국)	재무부 산하 독립규제위원회	통산부 소속 독립행정위원회
위원	6명(상임)	20명	9명(상임)	7명(상임1)
임기	9년 (연임불가)	5년 (연임가능)	5년 (1회연임가능)	3년 (연임가능)
인원	약 420명	약 200명	약 100명	52명
기능	○ 산업 피해 조사 및 구제건의 ○ 국제경쟁력 조사 ○ 무역, 관세 제도조사연구	○ 산업 피해 조사 및 구제건의	○ 산업 피해 조사 및 구제건의 ○ 경제, 무역, 관세관련조사	○ 산업 피해 조사 및 구제건의 ○ 불공정수출입 행위조사 ○ 국제무역제도 및 분쟁사례 조사
dumping 결정	상무부	집행위원회	국세부	무역위원회

## 나. EU

### □ 특징

○ EU반덤핑제도의 운용은 생산자 또는 회원국으로부터 EU집행위원회가 제소신청을 받으면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반덤핑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조사개시를 하며, 집행위원회 DG 1에서 덤팡 및 산업피해조사를 하고, 덤팡방지관세의 부과는 집행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반덤핑자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EU 각료이사회에 보

고하면 이사회는 의결절차(단순 다수결)를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EU각료이사회 : 잠정 및 확정 반덤핑관세부과 여부의 결정

## 라.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

- 담당기관
- EU집행위 : 제소의 접수, 조사개시 여부결정, 덤팡률 및 산업피해 유무조사, 잠정 및 확정덤핑방지과, 세부과안 이사회에 보고
- 반덤핑자문위원회 :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종결 및 잠정·확정 덤팡방지관세 부과와 관련

○ 미국, 호주, EU, 카나다 등 4개국이 전체의 76%로 대부분을 차지

○ 95년이후 WTO출범이후 선진국 발동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멕시코, 브라질, 터키 등 개도국 발동건수는 증가추세로서 적극적인 활용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주요국가의 반덤핑조치 현황〉

(단위 : 품목건수)

구 분	85/8 6	86/8 7	87/8 8	88/8 9	89/8 0	90/8 1	91/8 2	92/8 3	93/8 4	94/8 5	계	비 고 ('95)
미 국	65	41	30	25	24	53	62	68	47	30	445	13
호 주	55	40	21	20	23	47	76	61	45	6	394	4
EU	26	29	62	42	36	24	23	33	47	37	359	33
카 나 다	27	24	21	14	15	12	16	37	22	9	197	9
멕 시 코	0	2	17	17	9	14	25	24	23	18	149	1
브 라 질	0	0	1	1	0	2	9	10	30	12	65	5
뉴질랜드	0	0	4	5	1	6	13	4	2	9	44	11
풀 란 드	0	0	0	0	0	24	0	0	0	0	24	0
터 키	N.A	21	21	21	0							
한 국	3	1	0	0	3	2	0	7	4	3	23	4
기타국가	2	6	5	5	4	3	13	7	6	18	67	43
합 계	178	142	161	128	115	187	237	251	247	142	1,768	123

\* 회계연도(전년 7월 1일부터 후년 6월 30일까지)기준이며, 95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기준 변경

\* 〈기타국〉(95년) 칠레 4, 콜롬비아 4, 이스라엘 4, 인도 5, 말레이지아 3, 폐루2, 남아공 18, 베네수엘라 3

## II. 우리나라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 1. 제도의 도입

- 1963. 12. 5 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덤팡방지관세 부과 근거 도입”

### ※ 일본관세정률법 모방

- 1983. 12. 31 관세법 전면개정시 덤팡수입,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덤팡차액에 상당하는 덤팡방지관세 부과등 GATT

제6조 규정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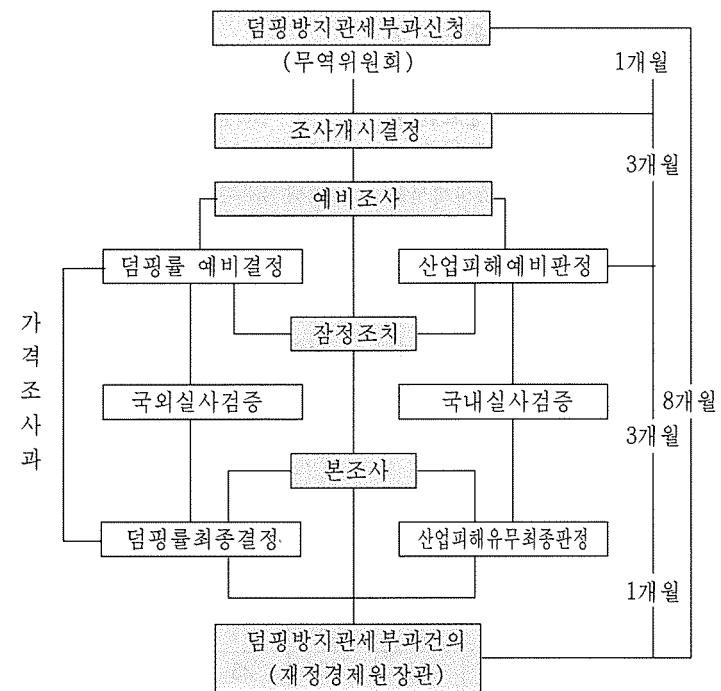
○ 1995. 12. 6 관세법 개정  
시 현재의 규정으로 개정

— 제10조(덤핑방지관세)

①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 하로 수입(이하 덤피ング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자연(이하 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등 “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기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피ング 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

— 신청자격 : 국내생산자 또는 주무부장관



속의 제의 및 수락, 재심사 접수  
및 개시결정

$$\text{덤핑률}(\%) = \frac{\text{조정된정상가격} - \text{조정된덤핑가격}}{\text{관세가격(CIF가격)}} \times 100$$

#### (2) 정상가격의 선정

### 2. 근거법규 및 담당기관

○ 근거법규 :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내지 제4조의 15

○ 담당기관

— 무역위원회 : 덤피ング방지 관세 부과신청의 접수, 조사개시 결정, 덤피ング 및 산업피해조사·판정, 잠정 및 확정 덤피ング방지관세부과건의, 약속의 접수, 재심사

— 재정경제원장관 : 잠정 및 확정 덤피ング방지관세의 부과, 약

### 3. 반덤핑 조사절차

○ 근거 :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4

### 4. 덤피ング률의 조사·결정

#### (1) 덤피ング률 산정방법

○ 덤피ング률의 산정은 정상 가격과 덤피ング가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국가에서 통상의 상거래로 이루어진 국내판매가격이며,

○ 국내판매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제3의 국가로 수출한 수출가격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생산비용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 결정한 구성가격이다.

○ 정상가격의 선정범위는 공급국 판매가격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되, 국내판매최소물량이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 제3국 수출가격과 구성 가격중 우선순위 없이 가능한 방법을 선정한다.

### (3) 덤핑가격의 선정

○ 실제 수출 가격 (export price)은 수출자가 우리나라내에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독립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경우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한다.

○ 구성수출가격(CEP : constructed export price)은 실제수출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한 수출가격을 구성하여 산정한 가격이다.

### (4)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에는 공정한 비교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한 동시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실시한다.

○ 이해관계인이 운반비 및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판매수량의 차이, 물리적 특성의 차이 등을 포함한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에 대하여 종거를 제시하는 경우 가격조종에 반영한다.

○ 덤핑률의 산정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가중평균된 1개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조정요소 비교표〉

정상가격 (Normal Value)	덤핑가격	
	수출가격(EP)	구성수출가격(CEP)
공급국 통상거래가격	한국추록가격	한국내 재판매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비</li> <li>- 보험료</li> <li>- 포장비</li> <li>- 창고료</li> <li>- 기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비</li> <li>- 보험료</li> <li>- 포장비</li> <li>- 창고료</li> <li>- 수출검사비</li> <li>- 하역비</li> <li>- 기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비</li> <li>- 보험료</li> <li>- 포장비</li> <li>- 창고료</li> <li>- 수출검사비</li> <li>- 하역비</li> <li>- 기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조건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li> <li>- 리베이트</li> <li>- 판매수수료</li> <li>- 품질보증비</li> <li>- 광고비</li> <li>- 신용비용</li> <li>- 기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조건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li> <li>- 리베이트</li> <li>- 판매수수료</li> <li>- 품질수수료</li> <li>- 광고비</li> <li>- 신용비용</li> <li>- 은행수수료</li> <li>- 기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조건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li> <li>- 리베이트</li> <li>- 판매수수료</li> <li>- 품질보증비</li> <li>- 광고비</li> <li>- 신용비용</li> <li>- 은행수수료</li> <li>- 기타</li> </ul> </li> </ul>
※ 구성수출가격산정시 정상가격에서 특수 관계있는 내수판매 법인의 판매간접비 조정은 거래단계의 차이로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 할인</li> <li>- 현지법인 리베이트</li> <li>- 현지법인 판매수수료</li> <li>- 현지법인 판매관리비</li> <li>- 관세·통관·운송부대비</li> <li>- 현지법인 이윤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상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환급</li> </ul> </li> <li>○ 거래단계의 차이</li> <li>○ 물리적특성의 차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단계 차이, 물리적 특성 차이, 과세상의 차이는 정상가격에서 조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단계 차이, 물리적 특성 차이, 과세상의 차이는 정상가격에서 조정함.</li> </ul>
조정된 정상가격	조정된 수출가격	조정된 수출가격

조종된 정상가격과 가중평균된 1개의 조종된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덤핑률은 동일모델별로 덤핑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률을 산정하되, 조사대상물품이 다수의 모델로 이루어진 경우

모든 모델별 덤핑차액의 총액을 해당 공급자의 대한국 총수출액(과세가액의 합계)로 나누는 방

식으로 가중평균하여 공급자별로 하나의 덤핑률을 산정한다.

○ 조사대상물품이 형태별, 품질별로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되

어 조정 사항이 너무 많거나, 조사 대상물품의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형태의 표본을 선택하여 덤피ング률을 산정할 수 있다.(이해 관계인이 합의한 경우에 한함)

## 5. 산업피해유무의 조사·판정

덤피ング수입사실이 확정되면 국내 동종산업의 범위를 결정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국내 산업설립의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 따라서 덤피ング을 조사결과 덤피ング협의가 없거나 경미한(덤피ング률 2% 미만) 경우에는 그로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여부의 판정은 필요없게 된다.

### 가. 덤피ング률과 국내 동종산업의 범위

○ 조사대상물품의 덤피ング률이 덤피ング조사팀에서 확인되면, 그 덤피ング률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그 범위를 검토·확정하여야 한다.

— 덤피ング률은 조사개시 결정, 덤피ング 예비 및 최종판정단계에서 달라 질수 있다.

#### 〈검토기준〉

□ 덤피ング률과 동종물품: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거나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으나 덤피ング률과 매우 유사한 특성·기능 및 구

성요소를 갖고 있는 물품

□ 국내산업의 범위: 동종물품을 생산하는(산업설립증 포함) 국내 생산자들의 집단

(c)(6)(c)도 이와 거의 유사)

#### 〈검토기준〉

□ 실질적인 피해

○ 덤피ング수입물량 및 덤피ング수입이 가격에 미친 영향

— 덤피ング수입의 물량이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

— 덤피ング수입이 상당한 가격인하,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 초래 또는 가격상승 억제

○ 덤피ング수입이 국내 생산자에 미친 영향

— 판매액·이윤·생산량·시장점유율·생산성·투자회수율·설비가동률 등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덤피ング마진의 규모

—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영향을 산업의 상황과 관련한 경제적요소 및 지표들에 대한 평가

#### □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 덤피ング의 피해를 야기할 사태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 덤피ング수출이 임박하고 또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덤피ング 물품의 현저한

## 수입증가율

- 덤픽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증가
- 수입가격이 현저한 국내가격의 하락 또는 억제여부 및 추가수출 증대 가능성 여부
- 조사대상물품의 재고 현황

## □ 국내산업의 설립의 실질적 지원

○ 국내산업이 아직 생산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생산개시와 관련한 실제적인 행위가 있었는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미국 ITC사례)

○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산업이 설립될 것이라는 어떠한 사실적 지표로서 산업설립계획에 대한 증거는 부동산, 기술 및 자본투자 등 증명필요(EU사례)

## 다. 덤픽물품의 수입과 실질적 피해간의 인과관계 검토

○ 덤픽물품의 수입사실이 있고 국내동종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면 다음단계로 덤픽물품의 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규명 하여야 된다.(WTO규정 3·5조)

— 검토지표 : 덤픽수입 물량의 증가여부, 덤픽수입이 국내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국내산업의 매출상실 등

## □ 덤픽수입과 실질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방법

### ○ 덤픽수입과 실질적피해

간의 인과관계의 규명방법에는 일원적 접근방법과 이원적 접근방법의 2가지가 있다.

○ 덤픽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간 인과관계는 모든 관련증거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며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와 비교형량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 덤픽수입과 실질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의 정도

○ 덤픽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간에 인과관계의 정도는 모든 관련증거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실질적 원인이었는지를 판단하면 되며, 세이프가드 조치에서와 같이 「중요하고 여타 원인에 못지 않은 원인」과 같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 덤픽수입 이외의 요인도 검토함

○ 덤픽과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덤픽이 외의 요인들로서 덤픽이외의 수입량 및 가격, 수요감소 및 소비양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간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경제기술 개발, 국내산업의 생산성 및 수출이행력 등의 요소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고 덤픽수입이 외의 영향을 덤픽수입의 영향으로

전가해서는 아니된다.

## 6. 산업피해구제수준 검토

○ 덤픽률(dumping)의 범위 내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덤픽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덤픽방지관세를 부과(lesser duty rules)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WTO협정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검토하여 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왔다.

○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은 국내산업의 국내시장 출하가격이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판매가격으로서 제조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와 경상경비에 적정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 경상경비는 생산 및 판매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하며 적정이윤은 국내산업이 속하는 산업이 실제 실현한 이윤으로 한다.

$$\text{산업피해구제수준(율)} = \frac{\text{국산적정판매가격} - \text{덤픽수입가격}}{\text{덤픽수입가격(CIF가격)}}$$

## 7. 덤픽방지관세의 부과

○ 외국의 수출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고 그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는 부과요건 충족시 반덤핑관세 부과

○ 잠정조치 : 예비판정결과에 따라 예비덤핑률에 의거 조사기간 동안 통상 4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잠정적으로 부과  
○ 확정 덤핑방지 관세 : 최종  
조사 결과 부과하는 확정 덤핑방지  
관세로 잠정조치에 의 부과된 관세  
는 확정관세에 의거 정산한다.

○ 부과기간 : WTO반덤핑협  
정 및 관세법상 5년까지 부과 가능

○ 소급부과 : 덤핑방지 관세  
는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 관세부  
과 결정일 이후부터 적용. 다만,  
잠정조치의 시행일 90일전까지  
소급할 수 있는 경우는 덤핑전력  
이 있는 경우와 수입자가 이러한  
덤핑 및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대량의 수입으로 피해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는 소급부  
과 가능하다.

## 8. 반덤핑관세 조치 실적

○ 무역위원회 발족('87. 7)  
이래 폴리아세탈수지 등 총 14개  
공산품목에 대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하고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덤핑방지관  
세 부과를 건의

- 관세부과 및 약속종료  
: 4개 품목
- 관세부과종 : 5개 품목
- 가격인상약속 : 3개 품  
목(D.C.P, 알루미나시  
멘트는 조사종결)
- 잠정조치 : 2개 품목

##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인상약속 현황〉

신청 년도	품 목	신청자	피제 소국가	덤핑관세율(%) 가격인상약속
'87.1	〈조치종료〉 • D.C.P	태화정밀(주)	일본, 대만	가격약속
'87.1	• 알루미나시멘트	(주)유니온	프랑스, 미국,	"
'90.8	• 폴리아세탈수지	한국엔지니어링 프라스틱(주)	일본	4%
'92.7	• 볼베아링 〈조치중〉	한국정밀(주)	태국	6.27%
'92.7	• 경제인산	한국정밀화학진흥회	중국	18.6-57.5%
'93.3	• PS인쇄판	헥스트산업(주)	일본	24.5%
'93.8	• 유리장섬유	한국베트로텍스	미국, 일본, 대만	10.3-58.7%
'96.1	• 에탄올아민	한국포리올	미국	가격약속 20.07-33.84%
'96.3	• 염화코린	코린화학	미국, 중국	33.83-49.62%
'96.6	• 소다회	동양화학공업(주)	중국	가격약속 22.04-24.49%
'96.6	• 전기면도기	우림전자(주)	일본, 독일, 네덜란드, 중국	가격약속 29.19-65.94%
'96.8	• 소다회 〈잠정조치〉	동양화학공업(주)	불가리아, 러시아	15.69-25.77%
'96.10	• H형강	강원산업(주)	러시아	15.43-15.64%
97.2	일회용포켓형라이타	라이타공업협동조합	중국	

※ 조사중 : 리히텐슈타인산 공기조절기, 대만산 EUA, 미국 및 말레이지  
아산 MDF, 중국산 푸르프릴알콜,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  
지, 미국 및 독일산 H메틸레스

〈사례 : 일본·독일·네덜란드 및 중  
국산 남성용전기면도기 덤핑조사〉

- (공장) 상 동

○ 자본금 : 47억원

○ 연간매출액 : 393 억원

(면도기 25억원)

○ 주요생산품목 : 전기면  
도기, 드라이, 가습기 등

### 1. 신청개요

#### 가. 신청인

○ 신청업체명 : (주)우림  
전자

○ 대표이사 : 윤청목

○ 주소

- (본사) 경남 양산군  
웅상읍 덕계리 89-

#### 나. 신청내용

○ 신청품목 : 남성용전기  
면도기(여성용면도기,  
코털깎기 등은 제외)

○ 관세분류 : HS 8510.

10.000

## III. 덤핑조사 사례연구

- 페신청국 : 일본(마쓰시다, 산요, 히다찌), 독일(브라운), 네덜란드(필립스), 중국(필립스, 마쓰시다전공, 만보전기유한공사)
  - 덤픽률 : 일본 마쓰시다 72%, 독일 브라운 69%, 네덜란드 필립스 118%, 중국 필립스 63%
  - 신청요지 : 일본, 독일, 네덜란드 및 중국산 남성용전기면도기의 덤픽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
2. 조사경과
- '96. 6.14 : (주)우림전자 덤픽방지관세 부과신청
  - '96. 7. 9 : 조사개시결정 (관보공고 '96. 7.20)
  - '96. 7.27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질문서 송부
  - '96. 9.10 : 네덜란드 필립스 등의 요청에 따라 예비조사기간 연장(1개월)
  - '96.11. 8 : 덤픽률 예비결정
  - '96.11.14 : 산업피해 예비 판정 및 잠정조치건의
  - '96.11.19 : 본조사 개시
  - '96.12.12~17 : 네덜란드 필립스, 독일 브라운 현지 실사 검증
  - '96.12.20 : 재정경제원 잠정 조치(29.19% ~ 65.94%)
  - '97. 1.14~17 : 일본 산요, 마쓰시다 현지 출장
  - '97. 1.28 : 산업피해관련 공청회 개최
  - '97. 1.30 : 독일 브라운 등의 요청에 따라 본조사 기간 연장
  - '97. 2.17~28 : 국내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 검증
  - '97. 3.14 : 산업피해 최종 판정 및 덤픽방지관세 부과 전의
  - '97. 5.17 : ▷ 재정경제원 덤픽방지관세부과(23.14% ~ 45.68%) ▷ 마쓰시다, 산요, 브라운, 필립스사 약속제의 수락( 덤픽률 80% 수준으로 수출가격인상)

가. 덤픽률 산출현황

- 공급국별, 업체별, 규격별 덤픽률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개별업체 덤픽률 산정근거  
<일본 마쓰시다전공(주)>

#### (1) 정상가격의 산정

- 통상거래가격
  - 현지실사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마쓰시다전공의 일본내 도매상에 대한 판매가격을 통상거래 가격으로 하였다.
- 일본내수시장 판매량의 충분성 검토(Viability Test)
  - 현지실사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일본의 내수판매량과 한국 수출량을 비교한 바 일본내의 판

### 3. 덤픽률의 결정

(단위 : %)		
공급자	1망식	2망식
○ 일본		
- 마쓰시다	40.06	30.09
- 산요	25.57	-
- 히다치	45.68	-
- 기타업체	33.79	30.09
○ 독일		
- 브라운	41.57	23.14
- 기타업체	41.57	23.14
○ 네덜란드		
- 필립스	-	37.76
- 기타업체	-	37.76
○ 중국		
- 마쓰시다	26.85	-
- 필립스	-	34.59
- 기타업체	26.85	34.59

주1) 기타업체는 국별, 업체별, 규격별 평균을 적용함.

매량은 대한국 수출물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4의 규정에 의거 일본내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이용하였다.

○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토 (Sales Below COP Test)

– 현지실사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마쓰시다전공의 원가를 판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거 일본내수시장 평균 판매가격과 비교한 결과 평균 내수 판매가가 제품 평균원가를 상회하므로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판매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 정상가격의 조정

– 내륙운송비

• 마쓰시다전공의 Personal상품사업부에서 발생한 평균 운송비(공장 - 물류센터)는 판매 가격의 X.XX%가 제시되었고 실사검증을 통하여 제시된 금액이 회사의 장부 및 증빙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마쓰시다는 물류센터에서 각영업소까지의 운송비로 판매 가격의 X.XX%를 현지실사시 공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공제항목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제시된 자료('95. 11월 장부사본)로는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용 가능한 자료중 일본의 생산업체인 XXXX(주)의 일본내륙 운송비율인 판매가격의 X.XX%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 기술보증비

• 마쓰시다전공의 Personal상품사업부에서 발생한 평균 기술보증비로 판매가격의 X.XX%가 제시되었으나, 실사검증결과 이중 순수한 제품무상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보증비는 판매가격의 X.XX%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수정반영하였다.

– 보관료

• 마쓰시다전공의 Personal상품사업부에서 발생한 평균 보관료로, 실사검증결과 답변자료와 차이가 없으므로 제시된 보관료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 광고선전비

• 남성용 전기면도기 내수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평균 광고선전비로 판매가격의 X.XX%가 제시되었으나, 실사검증결과 이 중 비교대상품목이 아닌 XXX 모델에 대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광고선전비는 판매 가격의 X.XX%임이 확인되었음으로 이를 수정반영하였다.

– 가격할인

• 남성용 전기면도기 내수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평균 가격할인으로, 실사검증결과 답변자료와 차이가 없으므로 제시된 가격할인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리베이트

• 전기면도기 내수판매와 관련하여 판매루트별로 발생한 평균 리베이트로 판매가격이 X.XX%가 제시되었으나, 실사검증결과 판매가격의 XX.XX%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수정반영하였다.

– 거래단계 차이

• 수입자인 XXXX의 판매기능과 일본내 대리점의 판매기능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쓰시다전공의 판매간접비중 관련비용을 XXXX의 관련비용을 한도로 조정반영하였다.

(2) 덤핑가격의 산정

○ 수출가격(EP)의 적용

– 마쓰시다전공의 한국수출은 특수관계 및 보상약정이 없는 수입자(XXXX)에 대한 판매이므로 대한국 FOB가격(EP)을 수출가격의 기초로 하였다.

– 실사검증을 통하여 대한국 FOB수출가격은 답변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제시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 덤핑가격의 조정

– 일본내륙운송비

• 마쓰시다전공의 히코네 공장에서 오사카 화물창고까지의 육상운임과 하역 및 보관료, 마쓰시다전기산업의 대한국 수출관련한 선적비용으로 예비결정시 FOB수출가격의 X.XX%를 적용하였으나, 현지실사검증 결과 X.XX%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정반영하였다.

– 광고선전비

• 마쓰시다전공 및 마쓰시다전기산업이 XXXX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마쓰시다전공의 제시자료를 반영하였다.

(3) 덤핑률 산정결과

## 〈참고〉

### 전기면도기 산업동향

구 분	단 위	'93	'94		'95	
				증가율(%)		증가율(%)
○ 국내수요	천개	909	956	5.2	1,115	16.6
- 국내출하	천개	685	562	△18.0	618	10.0
- 전체수입	천개	224	394	75.9	497	26.1
- 덤픽수입	천개	224	392	75.0	490	25.0
○ 국내생산업체	개	11	8		6	
- 생산중단업체	개	4	3		2	
○ 생산량	천개	1,098	1,172	6.7	930	△20.6
○ 매출액	백만불	4,856	4,699	△3.2	5,621	19.5
○ 영업이익률	%	5.8	6.0	-	4.7	-
○ 고용	명	167	167	-	152	△10.0

▶ 증가율 단위는 (%)임

○ 마쓰시다전공의 남성용 전기면도기의 규격별 덤픽률은 1망식이 40.06%, 2망식이 30.09%로 산정되었다.

#### 4. 국내산업의 실질적피해 유무판정

##### 가. 덤픽수입물품과 국내생산 품간 동종물품

○ 덤픽수입 전기면도기와 국산전기면도기는 전기작동에 의해서 남성의 수염을 깎는 물리적 특성과 용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이며 국내시장에서 상업적 대체성이 있으며 다양한 가격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종물품이라고 결정하였다.

##### 나. 덤픽수입품의 증가여부

○ 덤픽수입물품은 '93년 224천개에서 '94년 392천개, '95년 497천개로 전년대비 '94년 75.0%, '95년 25.0% 증가하였으며, 국내소비와 비교한 덤픽수입 품의 소비점유율면에서도 '93년 23.6%, '94년 41.0%, '95년 43.9%로 증가하였다.

##### 다.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 이에따라 국내생산업체 수가 조사대상기간중 '93년 11개 업체 도산 또는 생산 중단으로 '95년에는 6개로 감소

○ 생산량은 '94년 전년대비 6.7% 증가하였으나 '95년 20.6% 감소

○ 매출은 '94년 18.0% 감소, '95년은 10.0% 증가 하였

으며,

○ 국산품의 소비점유율은 '93년 75.4%, '94년 58.8%, '95년 55.4%로 감소

○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93년 5.6%, '94년 6.0%, 95년 4.7%로 증감하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 라. 덤픽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

○ 덤픽수입물량과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생산감소 및 매출둔화,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 일본·독일·네덜란드 및 중국산 전기면도기가 덤픽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판매됨에 따라 국산판매가격이 하락함과 아울러 가격상승이 억제되는 영향을 받아 매출감소 및 손익상태가 악화되는 등 덤픽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다면, 수입품중 3망식 고가제품은 국산판매가격보다 50% 이상 고가이기 때문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함으로써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5. 남성용 전기면도기에 대한 EU측 주장 검토

##### EU주장

○ 신청인과 신청에 찬성한 생

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전체생산량의 50%에 미달되므로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덤픽률 산정시 필립스의 한국 현지 법인의 이윤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해 주지 않았다.

○ 네덜란드 및 독일산 전기면도기는 고가품이므로 국산품과 경쟁관계가 없다.

○ 국내생산자드이 제출한 생산·판매 등 통계자료가 부정확하다.

#### 검토의견

○ 신청과 신청에 대한 지지도 조사결과 신청에 찬성하는 생산자의 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시한 자의 생산량의 50%이상이고 국내생산량의 25%이상이므로 신청 자격요건 충족

○ 미국과 EU 등 반덤핑관행상 정상가격에서 현지법인의 이윤을 공제해 주지 않고 있다.

○ 국내산업 피해판정이 3망식 고가품은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여 제외시키고 있다.

○ 본조사에서 생산자들에 대한 현지실사 검증을 거쳐 자료를 정확히 확정하여 피해판정하였다.

## IV. 반덤핑제도 운영전망

#### 〈선진국〉

○ 미국, EU, 호주, 카나다 등 주요선진국은 1980년대말까지 철강, 전자, 화학제품 등과 같이 자국의 전통적인 산업의 보호와 소비재로서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는 섬유, 잡화 등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발동하여 왔다.

그러나 WTO출범 이후에 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경쟁력 회복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3년까지 호주는 연간 50여건 이상을 발동하였으나 '94년이후로는 10건 미만으로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다.

○ 향후 선진국 국내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반덤핑제도의 발동은 영향을 받겠지만 신기술 개발제품 등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조정 등과 OECD를 중심으로 한 경쟁정책의 논의 등으로 반덤핑조치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개도국〉

○ 개도국은 GATT체제에서는 반덤핑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사전에 수입제한이나 관세 인상을 할수 있었으므로 반덤핑조치의 발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 그러나 WTO체제 출범이 후에는 잔존 수량제한의 철폐 및 관세양허 수준의 인하 등으로 개도국 국내산업은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려는 기대감이 커질 것임으로 개도국의 반덤핑조치 발동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도까지는 수입추천체, 수입감시제, 수입선다변화 등 사전적 규제 수단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관세양허품목 수와 양허세율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반덤핑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 WTO체제출범이후 수입 자유화가 폭넓게 추진되고 관세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업체들의 경쟁도 심화될 것임으로 반덤핑제도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리시장은 미국·EU·일본국내시장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주 큰 시장으로서 아·태지역의 주요한 시장으로 평가되고 후발개도국의 저가수출지역으로도 의미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